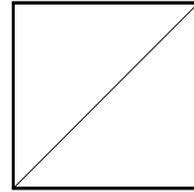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6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4. 1. 10. (제 1 차)	

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김 소 영
제출 연월일	2024. 1. 10.

1. 의결주문

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익명신고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의미한 제보의 남발을 방지하고, 원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익명신고 방식 도입 및 무의미한 제보 남발 방지(제6조)

익명 또는 가공인 명의로 신고를 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, 제보의 내용이 증거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한 경우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함

4. 주요토의과제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(규제 미포함)

라. 2024년도 제1차 안전검토 소위원회(2024.1.11.) 심의필

마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12.14. ~ 2024.1.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<별 지>

금융위원회고시 제 호

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5호 중 “제보가 익명 또는 가공인 명의의 진정·탄원·투서 등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그 내용이”를 “제보의 내용이 증거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거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조사의 실시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<u>제보가 익명 또는 가공인 명의의 진정·탄원·투서 등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그 내용이 조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6조(조사의 실시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제보의 내용이 증거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거나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총괄과	시장정보분석팀
연 락 처	02-2100-2579	02-3145-5560